7.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7일

□ 발 의 자 : 하중환, 김원규, 류종우, 박종필, 손한국,

윤권근, 이재화, 전경원, 하병문, 허시영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1일

□ 상정일자 :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23년 12월 13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하중환 의원)

□ 「상수원관리규칙」의 위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허가 대상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현)

□ 제안 취지 및 적법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많은 행위 제약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수도법 시행령」제13조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위임에 따라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 제994호) 제12조에서 상세한 종류와 규모를 정하면서,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건축물 등은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구시 조례로 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입법 타당성이 있음.

□ 주요 검토사항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가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어를 각각 「수도법」과「상수원관리규칙」의 조문을 인용하여 정의한 것임.
- 안 제3조(적용범위)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대구시 관할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함을 규정하였음.
- O 설치 허가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제1항)과 주민공동이용시설(제2항)을 나열한 것으로, 허가 대상 건축물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염 물질의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대구시 보다 먼저 조례로 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구 분		대구 조례안	부산	대전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소득 기반	1.	농립업용 취수시설	○ (1일 취수량 50㎡ 이하)	0	0	0	○ (1일 취수량 50㎡ 이하)	0
시설	2.	농림업 체험 및 실습시설(100㎡이하)	×	(300 m² 01 ōł)	(300 m² 0 l ōŀ)	(100 m² O l ōł)	(100㎡이하)	(300 m² 0 ōl)
(제1항)		-	_	스마트팜 재배사	ı	버섯가공시설	_	_
	1.	도서관	0	×	0	0	0	0
	١.	어린이집	0	×	×	0	0	0
		공원	\circ	×	×	×	0	0
주민	2.	놀이터	\circ	×	×	×	0	0
공동		운동장	\circ	×	\circ	0	0	0
이용	3.	주민자치센터	×	0	0	0	0	0
	4.	공동화장실	0	×	×	×	0	0
시설		공동목욕장(비영업)	0	×	0	0	0	×
(제2항)	5.	지역특산물 판매장	×	0	0	0	0	0
		-	복지회관	복지회관	복지회관	복지회관	복지회관	복지회관
		_	_	공동작업장	LPG소형 저장탱크	LPG소형 저장탱크	LPG소형 저장탱크	LPG소형 저장탱크

- 본 조례안에서 정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취지 내에서 주민 생활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한 시설물로 타당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타시도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수원관리규칙」에서는 허가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그 규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대다수 건축물 등에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비교적 폭넓게 구·군의 허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하여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등 위임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종류는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에 맞게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많은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복리에 대한 배려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한 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에 더하여, 자치조례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복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 조례안에서 정한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는 상위법령의 취지와 타시도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수원 보호와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권한은 구·군의 소관 사항이므로, 대구시는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건축물 등의 설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군에 대한 주기적 지도· 점검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허가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 6개소 4,905만㎜(1,483만평)

구분	보호구역명	면 적(m²)/평	지정일자	위 치
동구	공산저수지 (동화천)	3,477,251 (1,051,868평)	'16.10.10 (대구시공고845호)	지묘, 내동, 미대, 미곡, 진인, 능성, 백안, 도학동 일부
달성군	강정취수장 (낙동강)	3,535,223 (1,069,405평)	'72.2.2 (경북고시제13호)	취수정 상류 3.8km, 하류 1.2km, 남측 1.0km, 북측 1.0km (다사면 죽곡,매곡,문산,부곡동, 고령군 다산면 곽촌, 노곡동)
	가창저수지 (용계천)	40,653,993 (12,297,833평)	'72.12.21 (대구시고시제22호)	가창댐 상류 전체(정대1·2리. 오1·2리)
· 사 주 · 산	군위상수원 (위천)	559,652 (169,295평)	'98.9.9 (군위군공고제19호)	효령면 병수리, 성리, 오천리, 우보면 봉산리
	효령상수원 (남천)	572,383 (173,146평)	'91.8.29 (군위군공고제103호)	효령면 거매리, 금매리, 장기리, 중구리
	의흥상수원 (위천)	249,632 (75,514평)	'86.6.11 (군위군공고제20호)	의흥면 원산리, 파전리

※ 공산저수지 변경지정 : '16.10.10 (변경전 면적 : 9,525,957m² / '83.1.10)

- 변경사유 : 지정당시 유하거리를 현행규정 적용 [(당초) 7.5km ⇒ (변경) 4.8km]

■ 경산상수원보호구역

OL-1		—		
위치	경산시	대구광역시	계	비고
· 경산시 압량면 일원 · 대구시 동구 금강동, 대림동, 사복동 일원	5,700	977,458	983,158	

※ 당초 지정일자: '80.4.16(경상북도 공고 제60호), 변경 지정('14.10.10)

참고 2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 설치현황

구분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현황	비고(거주민 수)	
도그	공산	주택(8), 창고(6), 계측기실(3), 사찰(2)	거주민수: 14명	
동구	경산	휀스(98 m²)	거주민수: 0명	
달성군	강정	_	거주민수: 0명	
	가창	주택(347), 창고(67), 마을회관(4) 사찰(4)	거주민수: 562명	
	군위	농막(1)	거주민수: 0명	
군위군	효령	_	거주민수: 0명	
	의흥	_	거주민수: 0명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가능한 건축물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운동장, 도서관
등의 규모에 대해, 구군의 허가 재량이	등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성 사업이
많으므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대부분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른 시도와의 비교	어린이집 등 민간에서 설치하는 경우,
분석을 통해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지, 구군과 함께
공을 검토할 것.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O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O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O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해당 없음.